회계학 2부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30점)

<자료 1> (주)대한(중소기업이 아님)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2025.12.31.) 상가 분양 공사에 대한 자료이다.

1. (주)대한은 2024.3.1. 상가 50채에 대해 분양을 시작하였다. 분양계약자에게는 상가를 2026.10.31. 완공 즉시 인도할 예정이며, 상가 한 채당 분양가격은 ₩10,000,000이다. 모든 상가의 한 채당 분양원가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2025.12.31. 현재 분양률은 80％이다.

3. 계약금 등의 수령 내역 및 상가 건설에 투입된 분양원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계약서상 내역	계약금 ₩200,000,000	중도금 ₩150,000,000	잔금 ₩150,000,000
분양계약자로부터 수령액	계약금 ₩160,000,000	중도금 ₩115,200,000	잔금 ₩ ?
당기 분양원가	₩150,000,000	₩113,000,000	₩112,000,000

4. 총분양예정원가는 ₩375,000,000(추정하자보수비 ₩5,000,000은 포함되고, 용지구입비 ₩25,000,000은 제외된 금액)이다.

5.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한 분양원가는 추정하자보수비 중 ₩500,000을 포함한 금액이며, 전기에는 추정하자보수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6. 용지는 2024.2.1. ₩25,000,000에 구입한 것으로서 구입시점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완공시점에 공사원가로 회계처리 할 예정이다.

7. 분양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2채의 상가에 대해 계약해제 요청을 받았으며, 해당 2채에 대해서는 2025년도 중도금을 입금 받지 못하였다.

8. 당기 발생한 분양원가를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당기 분양계약자로부터 수령한 중도금을 공사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물음 1) <자료 1>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제25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자료 2> (주)민국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2025.12.31.)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 중 일부 내역이다.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신설에 따른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50,000,000을 2025.10.10. 납부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취득세 ₩50,000,000 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32,000,000이며,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18,000,000이다. 해당 건물(취득원가 ₩450,000,000)을 2025.10.10. 취득하였으며, 신고내용연수는 20년,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5,625,000이다.

2. 당기 중 정부와의 납품계약조건에 따른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5,000,000과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4,500,000(실제 발생한 손해액은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는 3배임)이 발생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한편, 정부에 납품되는 제품은 (주)민국에서 직접 생산한다.

3. 법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등록면허세 ₩1,200,000과 보유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3,000,000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토지개발부담금 ₩14,000,000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개발된 토지의 60 %는 매각하고, 40 %는 매각하지 못하여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5. 비출자임원 갑이 2025.12.31.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 ₩65,000,000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당사는 임원퇴직급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하고 있지 않다. 비출자임원 갑에게 2025년도에 지급한 총급여는 ₩90,000,000(급여 ₩60,000,000과 상여금 ₩30,000,000으로 구분 지급하였고, 상여금은 규정상 한도 내 금액임)이며, 근무기간은 2020.4.10. ~ 2025.12.31.이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민국의 제25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자료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국세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2025.12.31.) 업무용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자료이다.

1. 2025.4.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무용승용차D를 ₩132,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44,649,000을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신고한 상각방법은 정률법, 신고한 내용연수는 5년, 상각률은 0.451).

2. 대표이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D(법인업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는 2025.4.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다.

3. 업무용승용차D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11,000,000(부가가치세 ₩800,000 포함)이 발생하여 적정하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 업무용승용차D에 대한 운행일지를 적정하게 작성·비치하여 운영하였다. 제25기 사업연도의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용승용차D의 총주행거리는 23,000㎞이었으며, 이 중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는 19,550㎞이었다.

5. 2026.1.1. 업무용승용차D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88,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 금	88,000,000	대)	업무용승용차	13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4,649,000		부가세예수금	8,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7,351,000			

물음 3) <자료 3>를 이용하여 (주)국세의 제25기와 제26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같은 과목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6점)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제25기						
제26기						

<자료 4>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중소기업이 아님)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2025.12.31.) 지급이자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은 세무상 일반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자본화를 선택하고 있으며, 차입금은 모두 특수관계 없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다.

1. 포괄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와 차입금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행명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차입금 발생일	차입금 상환예정일
A은행	연 11 %	₩22,000,000	₩73,000,000,000	2024.5.1.	2026.4.30.
B은행	연 10 %	₩9,800,000	₩35,770,000,000	2024.7.1.	2026.6.30.
C은행	연 8 %	₩8,000,000	₩36,500,000,000	2024.9.1.	2026.9.30.
D은행	연 6 %	₩7,200,000	₩43,800,000,000	2024.11.1.	2027.4.30.

주) A은행의 차입금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차입한 특정차입금으로, 공장건물은 제24기 중에 착공하여 제26기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동 공장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25기에 지출한 건설비 적수는 ₩90,410,500,000이다.

2. (주)한국의 제25기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중 일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여금	대여발생일	비 고
우리 사주조합	₩90,000,000	2025.10.1.	(주)한국에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연 1 %의 이자율로 3년 후 회수하기로 하고 대여한 금액이다.
직원	₩25,000,000	2025.7.1.	거주자인 직원K씨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연 1 %로 1년 후 회수하기로 하고 대여한 금액이다.
대표이사	₩82,000,000	2025.6.1.	₩12,000,000은 (주)한국이 익금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주)한국이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이다.
상무이사	₩50,000,000	2025.3.1.	거주자인 임원H씨(무주택자에 해당함)의 주택임차자금의 일부를 연 2.4 %의 이자율로 3년 후 회수하기로 하고 대여한 금액이다.

3. (주)한국은 업무무관자산인 투자부동산(토지)을 2005.5.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에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제25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100,000,000으로 당기 중에 변동사항은 없다.

4. (주)한국은 2025.7.25.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선박을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200,000,000(시가 ₩250,000,000)에 취득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선박에 대한 유지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5. (주)한국은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이자율로 당기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며,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라고 가정한다.

6.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한다(예 8.1274％ → 8.12％).

물음 4) <자료 4>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자료 5>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 2025.12.31.)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자료이다.

1. (주)세무의 제25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된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목	외화금액	평가손익 반영 전 재무상태표 가액	평가손익 (영업외손익)
외화매출채권	$25,000	₩34,000,000	(-)₩500,000
외화대여금	$20,000	₩28,000,000	(-)₩1,200,000
현물차관	$12,000	₩16,200,000	-
외화차입금	$18,000	₩23,940,000	₩180,000

2. 외화대여금은 제24기말 잔액 $50,000 중 2025.3.5.에 $30,000을 회수한 후의 잔액이다. (주)세무는 외화대여금 회수에 따른 차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외화대여금의 전기말 △유보 잔액은 ₩5,000,000이다.

3. 현물차관은 회계담당자가 비화폐성 항목이라고 판단하여 기말에 외화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단, 현물차관은 2025.7.1. 해외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하면서 미국 화폐 $로 상환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4. 외화차입금은 2025.10.5. 미국 Y사로부터 2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차입한 것이다.

5. (주)세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한다고 신고하였으며, 제25기말 현재 1$당 매매기준율은 ₩1,340이다.

물음 5) <자료 5>를 이용하여 (주)세무의 제25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같은 과목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6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문제 2】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주)A는 제15기(2025.1.1. ~ 2025.12.31.) 사업연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주)B를 흡수합병(합병등기일: 2025.7.1.)하였다. (주)A와 (주)B의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다.

1. 합병 직전 (주)B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단위: 원)

유동자산	30,000,000	부 채	60,000,000
토 지	80,000,000	자본금	45,000,000
건 물	4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000
		이익잉여금	20,000,000
합 계	155,000,000	합 계	155,000,000

2. (주)B가 합병직전 보유한 자산의 시가 자료는 다음과 같고, 부채의 시가는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구 분	금 액
유동자산	₩30,000,000
토 지	100,000,000
건 물	45,000,000
합 계	₩175,000,000

3. (주)A는 (주)B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주)A의 신주(액면가액 ₩30,000,000, 시가 ₩160,000,000)를 교부하고, (주)B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인수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유동자산	30,000,000	(대)	부채	60,000,000
	토지	100,000,000		자본금	30,000,000
	건물	4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30,000,000
	영업권	45,000,000*			

* (주)B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주)B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또는 △유보)는 없다.

5. (주)A가 납부하는 (주)B의 법인세는 없다.

6. (주)A의 제14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합병매수차손과 자산조정계정의 기말잔액은 ₩0이다.

7. (주)B의 주주는 (주)C뿐이며, (주)C는 (주)B의 주식을 ₩80,000,000에 취득하였다. (주)A와 (주)C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자료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인 경우의 (주)B의 양도손익에서, 자료의 합병이 적격합병인 경우의 (주)B의 양도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제시하시오.

(2) 자료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제15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합병매수차손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3) 자료의 합병이 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제15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자산조정계정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4) (주)A가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제17기에 적격합병 과세특례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제17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합병매수차손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5) 자료의 합병이 적격합병인 경우로서, (주)A가 (주)B의 주주에게 제공한 합병대가가 자료와는 달리 '(주)A의 주식(액면가액 ₩30,000,000, 시가 ₩50,000,000)과 합병교부금 ₩60,000,000'일 경우 (주)C의 의제배당액을 제시하시오.

<자료 2> (주)한국(연결모법인으로 지주회사는 아님)과 (주)대한(연결자법인)으로 구성된 연결집단은 2024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 연결단위로도 비중소기업이다. (주)한국의 (주)대한에 대한 지분율은 100％이며, 2024년도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한국의 제15기(2025.1.1. ~ 2025.12.31.) 사업연도와 (주)대한의 제10기(2025.1.1. ~ 2025.12.31.) 사업연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한국은 2025.6.1. 장부가액 ₩150,000,000인 기계장치를 (주)대한에게 시가 ₩180,000,000에 매각하고 처분이익 ₩30,000,000을 인식하였다. (주)대한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신고내용연수 5년, 신고상각방법 정액법,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법상 상각범위액과 일치한다. (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관련 자료이다.
 (1) (주)한국과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서울의 주식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분율*1)	수입배당금*2)	주식의 장부가액*3)
(주)한국	18％	₩5,850,000	₩153,000,000
(주)대한	12％	3,920,000	102,000,000

*1) (주)한국과 (주)대한은 (주)서울의 주식을 2023년 초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2025년 말까지 지분율 변동은 없다.
*2) (주)한국과 (주)대한은 수입배당금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배당기준일은 모두 2024.12.31.이다.
*3) 2025년 중 변동은 없으며, 「법인세법」상 장부가액과 일치한다.

 (2) (주)한국의 자산총액은 ₩2,000,000,000, (주)대한의 자산총액은 ₩1,500,000,000이며, 연결법인간 대여금・매출채권・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제거액은 ₩500,000,000이다.

 (3) (주)한국의 지급이자는 ₩10,000,000, (주)대한의 지급이자는 ₩3,000,000이며, (주)대한의 지급이자에는 (주)한국에게 지급한 이자 ₩1,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지급이자 중에는 손금불산입액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없다.

3. 다음은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이다.

(1) (주)한국의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은 ₩54,000,000이며, 이 중 ₩3,000,000은 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 영수증을 수령한 것이고, 나머지는 연결대상 법인 이외의 법인에 법령상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이다. (주)대한의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은 ₩11,000,000이며, 이 중 ₩2,000,000은 (주)한국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는 연결대상 법인 이외의 법인에 법령상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이다.

(2) (주)한국의 매출액은 ₩12,000,000,000이고, (주)대한의 매출액은 ₩3,500,000,000이다. (주)한국과 (주)대한의 매출액에는 연결법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없다.

(3)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2025년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 ~ ⑤에 기재할 금액을 제시하시오. (10점)

구 분		(주)한국	(주)대한
1. 연결 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			
3. 연결집단내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1)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①	
: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1)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②	③
(2)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④	⑤
:			

【문제 3】 다음 각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각 자료에서 제시된 금액은 국내·외에서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거주자 갑의 2025년도 귀속 금융소득 및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1. 갑의 금융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1)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1,000,000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2)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10,000,000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따라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A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갑은 (주)A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500,000	금융회사 등이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고 환매기간에 따라 사전약정이율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의 매매차익이다.
(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3,000,000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 산업금융채권의 할인액	5,000,000	산업금융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것으로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한다.
(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0,000,000	해당 저축성보험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5년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다.
(7) 비영업대금의 이익	4,500,000	해당 이익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이익이 아니다.
(8)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3,000,000	갑이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외국법인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다.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외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 450,000원이 납부되었다.
(9) 조각투자상품인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4,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 2025년 7월 20일에 수령하였다.
(10) 공익신탁의 이익	2,000,000	해당 공익신탁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해당한다.

2. 갑은 금융소득 이외에 근로소득금액이 ₩50,000,000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액은 ₩10,000,000이다.

3. 소득세 기본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0,000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0,000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360,000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0,000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원)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0,000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0,000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10억원 초과	384,060,000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① ~ 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10점)

구분	금액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액	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③
종합소득산출세액	④

<자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인 (주)한국에서 부장(일용근로자 아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갑(남성 57세)의 2025년도 귀속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은「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를 신청하였다.

1. 근로소득 관련 자료
 (1) 갑이 2025년도에 (주)한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 합계액은 ₩72,000,000(월 ₩6,000,000 × 12개월), 정기상여금의 합계액은 ₩8,000,000(월 ₩2,000,000 × 4회)이다. 이 금액에는 아래 '(2) ~ (6)'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갑이 2018년도에 (주)한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한국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10,000개 중 2025년도에 3,000개를 행사하였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5,000이고 행사 당시 (주)한국의 주식의 주당 시가는 ₩100,000이다. 갑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은 이후 2024년도까지 행사한 적은 없고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사격으로 실제 매수하였다.

(3) 갑은 (주)한국으로부터 판매목적 제품을 시가인 ₩15,000,000에서 40％ 할인된 금액인 ₩9,000,000에 구입하였다. 해당 임직원 할인으로 구입한 제품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주)한국은 해당 제품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할인판매규정을 가지고 있다.

(4) 갑의 배우자는 2025년 5월 4일에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갑은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2025년 5월 25일에 (주)한국으로부터 ₩50,000,000의 기업출산지원금을 수령하였다. 갑은 (주)한국으로부터 해당 기업출산지원금 수령 이전에 기업출산지원금 및 자녀보육수당을 수령한 적이 없으며, 갑은 (주)한국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갑은 (주)한국으로부터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50,000,000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은 연 3.5％로 가정한다.

(6) (주)한국은 2025년도에 갑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5,000,000,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1,000,000,「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3,000,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500,000을 납부하였다. 또한 (주)한국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인 부담 보험료 ₩3,000,000을 갑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7)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2.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자료

(1) 갑은 2015년 1월 1일에 연금계좌에 가입하고 2022년까지 총 ₩56,000,000을 납입하였으며, 이 납입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2,000,000이다. 2025년 1월 1일에 연금수령 개시(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수령이 아님)를 신청하여 연금계좌에서 ₩12,000,000을 인출하였다.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해당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70,000,000으로 총 연금계좌 납입액 ₩56,000,000, 이연퇴직소득 ₩6,000,000(이연퇴직소득세 ₩300,000), 운용수익 ₩8,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연퇴직소득은 이전 직장에서 2020년에 수령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다.

(2) 갑은 웹소설의 원작자로서 원고료 ₩10,000,000을 수령하였다.

(3) 갑이 구매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10건(건당 단위투표금액 ₩5,000)이 전부 적중되어 환급금 ₩6,000,000(건당 ₩600,000)을 수령하였고, 복권 1건에 당첨되어 ₩2,000,000을 수령하였다.
(4) 갑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수상작품을 출품하여 수상자로서 ₩3,000,000의 상금 및 시가 ₩1,000,000의 부상을 수령하였다.
(5) 갑은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그 대가로 ₩5,000,000을 수령하였다.
(6) 갑은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수령한 금액이며,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① ~ ⑥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12점)

구분	금액
근로소득금액	①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 지급금액의 합계액	②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③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④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⑥

<자료 3>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갑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갑의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계산 등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25,000,000(국내은행이자)과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사업소득금액 ₩60,000,000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액은 ₩10,000,000이다. 갑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소득세 기본세율표는 <자료 1>의 소득세 기본세율표와 같다.

2. 갑의 기부금 등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부금 등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25년에 갑이 지출하거나 제공하였으며,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다.

구분	금액	비고
(1) 정치자금기부금	₩300,00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금액이다.
(2) 고향사랑기부금	2,000,00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다.
(3) 종교단체 기부금	10,000,000	「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4)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6,000,00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5) 사립학교 장학금	20,000,000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6) 이재민 구호금품가액	2,000,00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7) 자원봉사용역 관련내역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갑이 74시간, 갑의 직원이 42시간 자원봉사를 하였고,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유류비 ₩350,000(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 ₩100,000 포함) 및 재료비 ₩150,000을 지출하였다.
(8) 제품기부금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제품(장부가액 ₩2,000,000, 시가 ₩3,000,000)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의료법인에 기부하였다. 제품 기부금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① ~ ③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8점)

구분	금액
특례기부금 필요경비산입액	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②
「소득세법」상 기부금세액공제액	③

【문제 4】(주)대한은 유자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면세사업과 매입한 유자로 유자청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주)대한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니다. 각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주)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1. (주)대한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

2.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24년 제2기	2025년 제1기		2025년 제2기
		1.1. ~ 3.31.	4.1. ~ 6.30.	
유자판매사업(면세)	₩80,000,000	₩50,000,000	₩90,000,000	₩120,000,000
유자청 제조·판매사업(과세)	320,000,000	150,000,000	210,000,000	480,000,000
합 계	₩400,000,000	₩200,000,000	₩300,000,000	₩600,000,000

3. 유자의 매입과 사용명세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유자의 매입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며, 2025년 제1기 예정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구 분	2024년 제2기	2025년 제1기		2025년 제2기
		1.1. ~ 3.31.	4.1. ~ 6.30.	
유자매입원가*1)	₩120,000,000	₩75,000,000	₩90,000,000	₩180,000,000
유자사용명세*2)				
- 판매한 부분	₩36,000,000	₩20,250,000	₩36,000,000	₩63,000,000
- 유자청제조에 사용한 부분	84,000,000	54,750,000	54,000,000	117,000,000

*1) 운임 등의 부대비용이 제외되어 있다.
*2) 유자의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

4. 유자판매사업과 유자청 제조·판매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유자 세척용 기계장치A를 2025년 3월 15일 ₩10,000,000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해본 결과 유자세척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 5월 20일 ₩8,000,000에 매각하였다.

5. (주)대한은 유자판매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2024년 7월 15일 ₩20,000,000에 운반용 트럭B를 취득하였다. 이 트럭을 사용해본 결과 유자청 제조·판매사업에도 사용될 여지가 있어 2025년 3월 15일부터 유자청 제조·판매사업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대한의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 ~ 2025.6.30.)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제시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주)대한의 세척용 기계장치A의 취득과 관련한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시하시오.

(3) (주)대한의 세척용 기계장치A의 매각과 관련한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제시하시오.

(4) 운반용 트럭B와 관련한 (주)대한의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액을 제시하시오.

<자료 2> 다음 자료는 (주)대한의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 내역이다.

1. (주)대한은 유자청 ₩3,000,000(시가 ₩4,000,000)을 제조공장에서 직매장 소비용으로 직매장에 반출하였고, ₩5,000,000(시가 ₩6,000,000)은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였다.

2. (주)대한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0월 25일 $30,000의 유자청을 대행위탁수출로 선적하고 수출업자에게 수출대행수수료 ₩4,000,000을 지급하였다. $30,000 중 $20,000은 2025년 10월 10일 미리 받아 ₩24,000,000으로 환가하였으며, $10,000은 2025년 11월 1일에 받아 ₩17,000,000으로 환가하였다.
1$당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다.

날짜	2025년 10월 10일	2025년 10월 25일	2025년 11월 1일
기준환율	₩1,300	₩1,600	₩1,800

3. (주)대한은 유자청 제조·판매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절단용 기계장치A를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금수령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계약금(2025.4.10.)*1)	₩1,000,000
중도금(2025.7.31.)	5,000,000
잔금(2025.10.31.)	4,000,000
합계	₩10,000,000

*1) 계약금은 계약서상에 대가의 일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4. (주)대한이 2025년 11월 1일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유자청의 공급가액은 ₩10,000,000으로 내국신용장은 2026년 1월 24일에 개설되었다. 영세율 관련 기타 부속서류는 모두 제출되었다.

5. (주)대한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시가 ₩1,000,000(원가 ₩700,000)의 유자청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6. (주)대한은 창립기념일인 2025년 12월 1일에 종업원 50명에게 창립기념품으로 1명당 시가 ₩200,000(원가 ₩140,000)의 유자청 세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각 종업원들이 2025년에 제공받은 재화는 이 기념품이 전부이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5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10.1. ~ 2025.12.31.)의 과세표준을 다음 양식에 따라 구분한 후 ① ~ 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12점)

<자료 2> 항목번호	과세표준			
	과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1				
2				
3				
4				
5				
6				
합계	①	②	③	④